신 탁 계 약 서 변 경 비 교 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·② (생 략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3.·4. (생 략)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**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**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트러스톤 장기성장3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장기성장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3.·4. (현행과 같음) 5.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6.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7.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40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생 략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-----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. (생 략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----- 또는 주택저당	**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**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, -----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----- 또는 주택저당

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	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
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 ①(생 략)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1.·2.(생 략)	**제33조(투자신탁의 회계감사)** ①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 시행령 제2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·2.(현행과 같음)
제34조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(생 략)	**제34조(이익분배)**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(현행과 같음)
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(생 략)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(생 략) <신 설> <신 설>	**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** ①(현행과 같음)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~4.(현행과 같음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

③(생 략)	④(호번변경)
<신 설>	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